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마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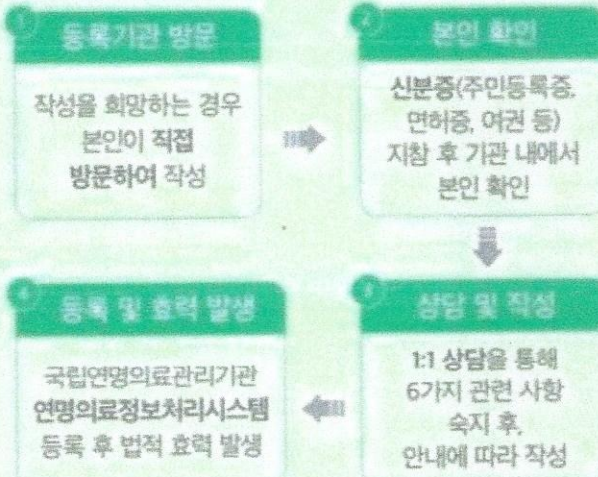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통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연명의료)을 유보(사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사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 2. 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전화 1855-0075)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 안내문

연명의료 결정제도 목적	<p>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p> <p>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p>
<p>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장소)</p> <p>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 - 등록기관 찾기</p>	

*총 2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보기
영동군 보건소	987m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7	043-740-5601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동출장소	1193m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6길 39	1577-1000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